

이 자료는 2017년 3월 28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

2017. 3월

기 획 재 정 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안)

2017. 3월

기획재정부

순서

[제1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I. 재정운용 여건 2
- II.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4

[제2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I.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26
- II.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28
- III.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29
- IV.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55

순서

[제3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I. 기금운용 여건	60
II.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61

[제4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I.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67
II. 기금 자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여	70
III. 수입계획 작성지침	72
IV. 지출계획 작성지침	74
V. 협의 및 보완	85

제1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I

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 지속

- 세계경제는 미국·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미국은 新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등으로 개선 예상
 - 유로존·일본은 내수회복세 둔화 등으로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중국은 경제 구조전환에 따라 완만한 감속 성장 예상
 - 기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러시아 등 자원국을 중심으로 회복 전망
- 다만, 보호무역주의 추세, 美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가능성, 유럽 정치리스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

□ (국내경제)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 세계경제 회복, 新산업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
- 다만, 기업구조조정 및 가계·기업부채 부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은 위험요인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17.3월)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2	3.1	3.4	3.6
- 미국	2.6	1.6	2.3	2.5
- 유로	2.0	1.7	1.6	1.6
- 일본	1.2	1.0	0.8	0.5
- 중국	6.9	6.7	6.5	6.0
- 신흥국	4.1	4.1	4.5	4.8
- 한국	2.6	2.6	2.6	2.8

-
- (세입여건)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향후 세입여건을 제약할 가능성
-
- 최근 세수증가는 기업실적 개선, 비과세·감면 정비효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다만, 대외 위험요인, 내수회복 속도 등 불확실성은 향후 안정적 세입 확보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 (세출여건)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여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대비 재정소요가 증가
-
- 의무지출 증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 확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
 -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지속 증가
-
- (수지·채무)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정효율화 노력 필요
-
-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매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이 반복
 - 위기 극복,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 필요

민생안정 · 경제활력 · 국민안심

**기본
방향**

- ◇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
- ◇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재원
배분
중점**

- 청년 일자리 지원
- 양극화 완화 및 일하는 복지 지원
- 저출산 극복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유망기업 지원
-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 국방 핵심전력 투자
- 테러대비 등 치안서비스 확충
- 환경위해 및 재난 대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4대 핵심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효율적 재정운용

- | | |
|----------------|------------------|
| ①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
| ② 신규사업 관리 강화 | ⑦ 용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
| ③ 의무지출 적정소요 추계 | ⑧ 대규모사업 관리시스템 연계 |
| ④ 보조사업 전면 점검 |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
| ⑤ 성과중심 재정사업 재편 | ⑩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 일자리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 확대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수출 역량 제고를 통한 균형있는 성장 지원

②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투자**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
- 환경 위해 및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③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 보조·출연·융자 사업 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신규사업 관리 강화 등으로 낭비없는 재정운용 도모
- 4대 연금 장기재정추계, 채무·수지 준칙 마련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선제적 투자 확대

2

재원배분의 중점

① “일자리 창출·양극화 완화·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 완화
- 직장어린이집, 결혼·출산,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도모

② “4차 산업혁명·신흥시장 진출·신산업” 투자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확대 등을 통해 수출역량 제고
- 바이오신약, 에너지 신산업, 농수산업 6차산업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③ “국방 투자·치안서비스·재난 예방” 으로 안심사회 구현

-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국방 핵심전력 투자 확대
- 테러 등에 대비한 안전 투자를 강화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서비스 확충
- 황사·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소 대응 및 지진·가축전염병·신종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 강화

⇒ 특히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투자 확대

3

재정운용 전략

◇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신규사업 관리, 의무지출 점검, 성과중심 사업 재편 등 재정운용전략 활용

①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

- 관계부처간 사전협의(4~5월)를 거쳐 융합 예산사업으로 요구 ('18년 예산에서는 대학창업, 관광, ODA 3대 시범분야 실시)
- '18년도 시범사업 효과,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융합예산 사업 확산 추진

② 신규사업 관리 강화

- 각 부처는 신규사업 요구시, 과거 유사중복이 빈번히 발생했던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 기존사업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사업 요구시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시설예산은 지방교육기관 등 유휴시설 활용 우선 검토
 - 각 부처는 4월내 부처·소속기관의 유휴시설을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의무 등록

③ 의무지출 적정소요 추계

- 의무지출 사업은 추계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이전용 내역 등을 감안하여 필수소요 요구
- 특히 신규 의무지출 사업은 중장기(10년) 지출계획 제출

④ 보조사업 전면 점검

- 각 부처는 보조사업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지속 지원, 감축, 폐지 등을 구분하여 요구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폐지 등 예산에 반영
 - '17년 평가 미대상 보조사업은 각 부처가 지원 필요성, 최종 수혜자, 부정수급 사례 등을 사전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요구
-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허위, 중복사용 등 검증
-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

⑤ 일자리·중소기업 수출·R&D 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
 - 일자리 사업은 사전 협의제를 통하여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효과성 제고 노력 강화
- R&D 분야는 성과가 미흡한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 및 R&D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의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거쳐 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산 요구
-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합리적 수입계상 기준 마련

⑦ 용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 각 부처는 용자사업 금리체계,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요구
- 사업별로 복잡·다양한 금리 등 용자조건을 개선
 - * 용자사업 비용-편익 분석,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한 재정용자사업 공통 지침(가칭)을 마련하고, 부당집행 발생시 환수조치 등 집행관리 강화 예정

⑧ 대규모 사업 관리시스템 연계 강화

- 예타-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 예타대상이 아니더라도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등
-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
 - * (현행)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개선) 사업규모별로 15~20% 차등화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 장기·고액 채무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재정수입 기반 강화
-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재정의 자금의 국고 편입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각 부처는 세입예산 요구서 상 '자체수입 증대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요구

⑩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70년) 실시
-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 등을 마련
-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복지 분야

1. 투자 중점

-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
 -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강화,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등 소득분배 개선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 체감도 제고
 -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일을 통한 복지지원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운영중인 제도·사업의 실효성 확보
 - 청년 취업 및 주거 지원, 임신·출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결혼 및 출산·육아 여건을 개선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층, 1인가구 등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고, 저리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보건산업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 감염병 예방·대응,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자 강화
 - 첨단의료 연구기반 확충, 신약·화장품 개발 지원,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체계화 등을 통한 의료한류 확산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금·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및 호국·보훈정책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중위소득, 평균소득 등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 기준 정비
- 보건의료시설 유형별 설치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 정비
- 4대연금 중심의 장기(70년)재정추계를 통해 재정지속가능성 진단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 무임승차 방지,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급여지출 효율화

< 일자리 >

1. 투자 중점

-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로 청년고용 촉진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발굴, 일경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 청년 대상 직접일자리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과 연계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 유도
 - 산업수요 변동에 대응하여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창업지원 강화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시간선택제 확대 등으로 고용 촉진
 -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지속 등으로 여성 취업지원 강화
 -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최소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등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해소
 -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 통합 서비스, 현장 교육 등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근로자 역량 강화
 -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망 및 취업지원 기관을 연계·일원화 하여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직업훈련 성과제고를 위하여 유망산업 위주로 훈련과정 재편 및 훈련기관의 활용도 제고 추진
- 일자리 사업 사전 협의제를 통하여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연계·협업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2. 교육 분야

1. 투자 중점

-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학습환경 조성
 -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SW교육 강화, 참여형 수업모델 발굴 등 맞춤형 교육기반 지속 확대
 - 학생들의 적성과 다양한 성장경로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기회 제공
-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고등인재 양성체제 구축
 -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등 산학연계 모델 확산을 통해 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대학 내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전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 개인의 역량개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평생교육 강화
 - 전문대의 재직자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하고 K-MOOC, 성인 문해교육 등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국가장학금의 정책효과성 제고
 - 장학금의 취업연계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
- 고등교육 지원사업 내실화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 평가 지표 개선 등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 교육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춰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모델 발굴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투자 중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콘텐츠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활용·연계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지원에 역점
 - 문화기술(CT) R&D 투자 및 저작권 보호·활용 확대 등 콘텐츠 산업 성장기반 강화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인프라 확충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MICE·의료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지속 투자
 - 개별 관광객 확대에 맞추어 교통·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체육 등 국민 여가향유 기회 강화
 -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취향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 허브(Hub)화를 통해 문화향유 체감 확산
 -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의 활용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한 고령사회의 건강한 삶을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소액·다건식 지원 및 보조사업 중심의 지원방식 개선,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재정의 자금의 기금 편입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등

4. 환경 분야

1. 투자 중점

-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
 - 미세먼지 감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에 중점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황사·미세먼지 등 예·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자 지속
- 노후 환경 인프라 개량 및 상대적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
 - 싱크홀·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 환경인프라의 개량(교체, 보수) 투자비중 확대
 -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해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도서지역 투자확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제고
- 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시설확충 투자를 유지하고, 생태계 훼손지 복원을 위한 투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 환경 인프라 투자 내실화
 - 운영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수도시설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투자를 축소하고 교체·개보수 투자에 역점
 - 국고보조사업 지원·선정기준 재정비 및 지자체 책임성 강화
- 유사·중복 투자 방지 및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제고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실집행 가능성 분석, 유사·중복 투자 방지, 회계 일원화 등으로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투자 중점

- 수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확대,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수출회복에 중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대항 서비스와 해외전시회 참여 확대
- 창업 생태계가 단계(창업 → 도약 → 글로벌 성장 → 회수)별로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차별화된 기술·경험을 보유한 창업자 선별, 성장 및 글로벌 진출 단계 투자 확대,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조업과 ICT기술의 융합, 에너지 신산업 등에 투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新기후체제 출범에 대응

2. 지출 효율화 방안

- 수출바우처 확대 등 수출지원체계 개편 확대
 - 기업의 선택권 제고를 통한 시장기능·경쟁 활성화,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 정비 추진
- 기업지원 사업을 '성과창출 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
 -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한계기업 지원 또는 '나눠먹기'식 지원 사업은 과감히 축소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한 지원기준 정비

6. SOC 분야

1. 투자 중점

- 핵심 기간교통망을 적기 확충하여 거점간 네트워크 강화
 - 건설사업은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주요 교통망,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차소요 적기 지원
- SOC 시설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안전 향상
 - 도로·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 등에 투자
- 혼잡·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등은 타당성이 검증된 시설 위주로 도시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편익 제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교통수단 상용화 및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활용 등에 투자
- 수역정비 등 항만시설 운영효율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및 재개발사업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및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로 신규소요를 최소화
- 계속사업 중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사업 등은 연차별 적정 투자규모를 재검토
- 다양한 경영·관리기법 및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SOC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절감 추진
-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

7. 농림수산 분야

1. 투자 중점

-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활력 제고
 - 가축질병 및 국가재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예방체계 구축,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농어업의 6차산업화 촉진
 -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으로 우수인력 및 자본의 농어촌 유입 유도
- 농수산물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능 강화
 - 쌀 수급균형 및 밭농업 육성, 생산자단체 중심의 사전 수급조절 등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직거래,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 등 신유통을 확충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마케팅 강화로 소비 촉진
-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개척으로 FTA 활용 극대화
 - 양식산업 첨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국내 수산물 품질 제고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구조적 과잉공급 품목에 대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격지지 및 소득보전 등에 투입되는 지출소요 최소화
-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완공소요·재해예방 중심으로 투자 내실화

8. R&D 분야

1. 투자 중점

- 선택과 집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에 R&D 투자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선도·확산
 - 정밀의료 등 국가전략 분야와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신산업 창출 및 기후변화에 대응
- 과학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증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 기술혁신, 수출촉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재난·재해 등 안전분야 R&D 투자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뒷받침

2. 지출 효율화 방안

- 구조조정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성과미흡 및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장기계속 R&D 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
 - 지역 R&D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既 구축 시설에 대한 활용도 및 성과 제고 방안 마련
- R&D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
 - 국방 분야 R&D 효율성 제고 및 민·군 기술 활용촉진 등을 위해 예산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검토 실시
 -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R&D 바우처 지속 추진 및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6개)의 민간수탁 확대 유도

9. 국방 분야

1. 투자 중점

-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Kill-chain, 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철저 대비
 - 작전시설 보강 및 적정 군수지원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장병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 급식, 피복 품질 개선, 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복무 만족도 제고
 - 독서카페 설치와 도서 확대 보급으로 생산적 복무여건 보장 및 인성함양교육 등 병영문화 선진화
- 국방 R&D를 통한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 전략무기 및 신무기체계에 국방 R&D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 등 민군 기술협력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강도 높은 업무재설계를 통한 국방자원관리 효율화 추진
 - 수리부속 운영 효율화,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관리체계 정립, 군인복지기금 운영 효율화
- 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최소화

10. 외교·통일 분야

1. 투자 중점

- 북핵문제 및 국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 협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지원
- 우리 국민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 기반 마련
-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와 남북간 교류·협력 기반 구축
 - 북한인권, 탈북민 정착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을 통해 민족 화합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
 - 통일문화·교육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등 통일준비 사업 지속 추진
-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개도국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속 지원
 - ODA와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진출간의 연계 강화

2. 지출 효율화 방안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별 소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민간 ODA 자원과의 연계 및 국제기구·민간 등 다양한 ODA 수행 주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원조 효율성 제고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투자 중점

-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특성·선호에 기반한 맞춤형 지역발전시책을 적극 뒷받침
- 정부3.0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 제공 및 편의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서비스·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촉진하는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
 - 민원·건강·환경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
-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를 차질없이 지원

2. 지출 효율화 방안

-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포괄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용
 - 문화·복지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이관
- 특별교부세의 국가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
 - 특별교부세 배분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국가 정책 관련 지원을 확대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투자심사 확대 등을 통해 선심성·낭비성 행사로 인한 비효율 방지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1. 투자 중점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및 생활법치 확립
 -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과학·사이버 수사역량 강화 및 범죄 초기대응 능력 제고
-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
 - 범죄피해자 전문 치유시설 운영, 진술조력인 양성·배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구조 및 사회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
-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경비 역량 제고
 - 노후함정 개선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장비 지속 확충

2. 지출 효율화 방안

- 범죄예방 지원정책 사업에 대한 효율화 및 부처간 연계 강화
 - 개별 부처별로 수행중인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기적으로 조정
- 해경 기존 장비·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중점을 두어 신규 도입 소요 최소화

< 안전투자 >

1. 투자 중점

- 재해·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 강화
 -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공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보수·보강 지속 추진
 -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지진, 신종 감염병, 가축전염병, 대형화재, 싱크홀·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
-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생활화학제품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사업 지원 강화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국민참여형 안전점검 활동 및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 강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2. 지출 효율화 방안

- 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안전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투자 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교세 재원으로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 확충 강화

* 지방의 안전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와 소방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 투자비율 마련

제2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I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 부처 실무자들이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기준·단가 등을 수록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목별 매뉴얼)」은 별도 배포

2

적용 대상

-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3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내부 의견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 (예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를 거쳐 예산을 요구

□ 첨부서류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 '17~'21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 '18년도 성과계획서, '16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조)
-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2018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5.2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II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국세수입

-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 수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적극적인 국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

2

세외수입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 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배당수입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배당정책(14.12월)에 따라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적정한 배당성향 산정기준을 적용
 -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징수율이 낮은 경상이전수입은 실효성 있는 불납결손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 납기를 초과한 연체채권은 채권관리 전문기관 활용 등 적극적 세외수입 채권관리 계획을 제시
 - *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내용을 포함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 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

[신규사업]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 201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
- 신규사업 총소요는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 (예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 신규착공 등은 쌀 공급과잉과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재원대책 마련

-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2018년도 청사 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과의 연계**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 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 산출내역'을 제출

[계속사업]

- 모든 재정사업은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 재검토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

[유사·중복 사업 조정]

- (정비 원칙)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 (부처간 유사·중복)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
 - 서로 다른 부처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 지원대상은 다르나, 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주요 통합사례 >

-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대상별로 미래부(중·고등학생 및 성인)와 방통위(유아·초등학생)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방통위 사업으로 통합

- (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부처별로 추진하되 단순 회계통합 보다는 전달체계와 사업방식 개선 등 실질적 효과에 집중
 -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 동일 사업목적과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분산 추진 → 여유자금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관
 -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
- (신규 요구사업 유사중복 상호검증)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부처간 상호검증 체계 도입
 - 유사중복이 분명한 경우 미반영 원칙, 의견 미제출 부처에 대해서는 추후 기존 사업 통폐합 우선 고려 등 불이익 검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세부사업 및 주요내역사업 변동 포함) 요구시 [양식 8]의 신규사업리스트를 작성하여 「2018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보조사업

1 신규 보조사업

-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은 요구 불가
 -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특별교부세(금) 지원 사업 포함)은 예산 요구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을 요구
- 100억원 미만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타부처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심사
-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 검토

2 계속 보조사업

- 원칙적으로 '17년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 미대상사업은 [양식 9]의 '보조사업 자체진단서'를 활용하여 각 부처가 사전점검

< 점검 제외되는 계속 보조사업 >

-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방분야사업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
- ✓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 ✓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 * ex)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 등

③ 자치단체 보조사업

-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
- 사전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 사업계획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시설사업의 경우 2~5년간의 조사·설계-보상·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집행부진, 지방비 미매칭 등)을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계속사업은 전년도 기 지원한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 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④ 민간 보조사업

-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5 보조사업 구조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구조조정 대상(예시) >

i)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ii)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iii)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iv)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v)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vi)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 보조사업 평가(운용평가 및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15년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중 '18년 폐지·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18년 폐지·단계적 감축·사업방식 변경 대상 사업
 - '17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폐지·조건부폐지 대상 사업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용방안
○ 보조사업 운용평가('15)		
폐지	① 즉시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② 단계적 폐지	▪ 계속사업 진행 등으로 즉각적 폐지는 곤란하나, 사업목적 달성 시점을 명시(일몰기한 제시)
	③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유지	④ 단계적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⑤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⑥ 정상 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보조사업 연장평가('16, '17)		
① 정상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고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②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③ 조건부 폐지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 세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 현행 직접보조 방식 →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토지매입비) 방식으로 전환
- ✓ 보조기관·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 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 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 실 집행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 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방식 등 결정

[기본원칙]

-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중복사업 등으로 평가받은 사업의 경우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여 예산 편성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예산연계 기준]

통합 재정사업평가

-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 요구 및 편성
 - *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기준
 - 평가대상사업 총액의 1%이상 범위에서 구조조정 실시하되, 미흡사업 위주로 구조조정하여 예산 요구
 -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되, 향후 사업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조정 가능
 - ※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감액 규모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
 -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심층 평가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
-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소관 주무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예정
-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사업내용변경(보조율 증감, 지원단가 및 물량 변경 등)시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별 사업개요 수정

□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증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단위사업 기준)에 대해 성과지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운영
 -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산식 등을 성과계획서 별첨 자료에 작성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규사업의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편성시 활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본 원칙]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반드시 참조)
 - 공공청사·교정시설·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복구, 안전 관련 사업
-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

[세부 지침]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매년 4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제출(예타 운용지침 제15조~제27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타 운용지침 제11조 참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3조)
 -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10조)
 -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기본 원칙]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반영」 절차 준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 사업
 - 그 밖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 및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등 관리 필요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세부 지침]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의 경우 dBrain 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자율조정 후 예산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26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작성 대상 사업]

- 성인지 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세부 지침]

- 성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i) 성평등 목표, (ii) 사업 총괄표, (iii)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 (성평등 목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7년 및 '18년 예산현황 작성
 -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8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편성 대상]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 부문(장관항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편성제외 대상]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기본원칙]

-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 강화
- 사업별 평가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활용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

[예산연계 기준]

고용영향평가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고용영향평가(고용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예산 요구시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결과, 고용 친화적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
- 기존의 고용영향자체평가는 고용영향평가로 통합하여 운영
 -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부처가 평가하고 평가결과(제도개선 방안 포함)를 예산 요구자료에 포함

- (대상사업)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
 - ① 주요 일자리 사업('17년 기준 17.1조원, 25개 부처, 185개 사업)
 - ② 고용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 단, 법정지출 등 경직성 지출, 재난예방·복구 사업, 국가 안보·국가간 협력 관련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
- (평가결과) 예산안 편성시 고용창출규모,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
- (향후일정) 부처별 평가대상 사업선정 및 담당자 교육(4월말)
→ 예산 요구(5월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
('17.4월 배포 예정)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 의견 등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송부

-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국가재정법 제12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1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기준 참조)
 -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출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사전적격성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안 요구
- 세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지원소요 연차별 축소하고, 향후 출연금 (보조금 포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기관 차입 등은 금지
 -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 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
 - 제도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예정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 자체수입 증가없이 사업비 등 지출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중단
 -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 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 재정용자사업

- 수요 부진 등으로 연례적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용자사업 규모 축소 또는 폐지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특별회계·기금 사업

-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대폭 정비
-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 특별회계·기금의 자체세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18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18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 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 조세지출 건의·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ODA 대상 사업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ODA 대상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에 사전 제출

* (양자) 유상: 기재부, 무상: 외교부

(다자) 국제금융기구: 기재부, 그밖의 기구: 외교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
- 다만, 국제기구와의 협의, 외교적 여건 변화,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

□ 국가지분취득 사업(지분취득비 비목 신설: 400-490)

- (편성대상) 국가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도 신규 요구사업*

* '18년도 신규사업 중 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추진사업, 지특(생활기반계정) 등, 사업규모, 지원비율 등이 이미 결정된 사업은 제외

- (지분취득) 매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국고지원분만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사업 운영기간 종료시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 목적으로 활용

□ SOC 사업

- (신규사업) 1차년도에는 설계비 등 적정소요 반영

- 조사·설계 수행 연도에는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보상비·공사비 과다 편성·배정 금지

- (계속사업) 전년도 既지원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 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 신규 용역사업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준비기간을 감안,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실사용분만 반영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개발(R&D) 등

- 사업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2단계 계약 추진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

- 지출증가·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 협의절차 : 재정전략협의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정부내 협의 · 조정기구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고지원을 1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01년 이후 1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 배제
- 사후평가 결과 총관람객 수, 외국인 참여비율 등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불이익 부과

□ 2018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17.3.31일 종가 환율
-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美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17.3.31일 종가)

※ 2018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

IV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참고)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 (예시)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 중앙과 지방과의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자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대상·지원조건·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 (예시)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 재정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을 지정 후 예산안 요구시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여부

□ 세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②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18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 (예시)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 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제3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① (경제여건)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하방위험도 상존

※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② (수입여건) 자체수입 확대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 기여금 등으로 인해 전체 자체수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 따라 용자금 회수, 부담금 수입 등 증가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③ (지출여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 증가 전망

-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출 소요가 지속 증가
-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④ (기금수지) 전체적으로는 흑자, 사업성기금은 적자 지속

- 불확실한 수입여건 및 미래대비 지출, 차입금 이자 증가 등 구조적 여건으로 사업성기금 수지는 적자 지속 전망

Ⅱ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강화

-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4대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지원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
-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융복합 기술혁신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
- 범죄,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료 등의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지원

②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강화

- 신규사업 유사·중복 사전점검, 용자사업관리체계개선 등 재정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기금 건전성관리 강화(제1부 예산안 편성 지침 참조)
-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지출증가는 자체수입 증가 범위 내로 억제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도 병행
-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지원분은 반환 추진
- 국민연금 자산운용체계 개선, 여유자금 투자풀 활용 등을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확대하는 등 통합관리 강화

2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

(1)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①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최소화 및 고용안전망 확충

- 사업주 훈련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을 통해 조선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최소화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통해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②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확대

- 노동시장 조기진입 유도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확대 및 직업 훈련과정 재설계 등을 통해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
- 모성보호 육아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지원 인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
- 고령·여성·중증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 취업촉진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

③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적응 지원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육아, 언어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④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 강화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전세→월세', '소유→거주'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
-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출한도·금리 우대지원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⑤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과 농어가 경영 안정

-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 효율화, 비축 등 농수산물 수급조절 노력 등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유도
- 가축질병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수입보장보험과 재해보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농지연금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⑥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지원

- 생계형 업종 창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
-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등 시장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객편의 시설과 마케팅 기법 개선 등 맞춤형 지원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①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및 ICT 융·복합기술혁신 촉진

-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기반기술 개발, 데이터의 수집·저장과 분석·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조업과 ICT 등을 결합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신산업 발굴
- 양자정보통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등 미디어·통신산업 신기술분야 지속 지원
- SW, ICT,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②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초기기업에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자금(투·융자) 등을 지원하여 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도약 지원
- 성장 단계 기업에는 사업확장 자금과 해외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촉진
- 경영 위기 기업에는 경영안정 자금과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재창업·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 등 산업기반 지속 구축

- 교통·숙박 등 관광인프라를 개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MICE산업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도 지속 투자
- 산·학을 연계한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확대
- 유통·정보 등 산업기반 조성, 우수 콘텐츠 발굴·지원 등 유망 문화콘텐츠 분야 육성을 위해 지속 투자

[3]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① 범죄·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취약계층 법률구조 강화

- 강력범죄·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상담, 심리치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 사후지원체계 강화
- 신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여성·아동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지원체계 내실화

②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지원을 강화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권역응급센터, 재난응급 상황실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분야 지원

③ 산업재해 예방 및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

- 산업사고 취약지역의 산재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의 유해 작업환경 측정, 위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④ 생활 속의 문화·체육 향유기회 확대

- 문화예술 창작 지원,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문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여 지역적·경제적 문화격차 해소
- 국민 체력증진 및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

제4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I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

지침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2

적용대상

-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

3

요구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첨부서류
 -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수량 등)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 2017~2021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제출기한

-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5.26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에 따른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준용 규정

-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중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 있는 부분은 모두 준용

□ 기금 자원배분 개선 및 건전성 제고

① 여유자금에 있는 기금

- 타 회계 등의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된 정부 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 반환 추진
- 타 회계 등의 사업 중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이관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확대 및 신규예탁 등 통합관리 강화
-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차입)를 억제하고, 기존예수금은 조기상환 추진

② 타 회계 등에서 기금으로 전출

-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
- 기금사업은 기금의 여유재원 및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타 회계 등의 지원은 최소화
-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전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산정

③ 재정 외 자금의 재정체계 내 편입

-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을 발굴하여 재정체계 내로 흡수

④ 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화 노력

- 사회보험의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화 및 장기재정추계(70년)를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 강화

II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①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

- 보조금·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용자대행기관을 통한 용자사업
 - * 대출금리에서 용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특히 여유자금 회수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가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

②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거시경제지표, 최근 3~5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수입 추계
-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추계모형을 개발·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 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

* 예시 :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 편성 적정성 제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기금 지출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반영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고자 하는 기금은 자금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

④ 법령, 지침 등 변경시 사전협의

-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 과 「용자이자수입」 으로 구분하여 산출·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18년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상품 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용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18년도 각 용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대출이자율 - 용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용자평균잔액은 용자잔액규모, 용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용자원금회수

□ 2017년도말 추정 용자잔액 중 2018년도 정기(반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3~5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용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최소화
 -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자원, 자체수입 등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타 회계 등의 전입은 최소화
 -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최소화
 -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 규모로 한정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4] 여유자금 회수

- 2017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18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2016년도 미집행 잔액 등 결산상 잉여금은 2018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 2017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17년도 계획에 반영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 보조·출연사업의 적격성 심사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개편된 비목 변경 내용을 준수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을 의무화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투자효과 극대화
 - 신규의무지출 사업은 중장기(10년) 지출 계획을 첨부(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
- 기금·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하고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제1부 제2편 예산안 편성지침 중 성과평가 대상 사업부분 참조)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 준수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
 -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18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 청·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17.1.20일)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설계 등 방식을 채택
 - 신규 시설·장비 도입시 인력운용 등 총비용 관점에서 검토
 - 신규 시설·장비 도입과 관련, 예산편성시 직접비용 외에 인건비, 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
 - ⇒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

-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과도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예의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기금운영비는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를 엄격히 관리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기금운영비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 「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18년도 인건비 총액 = 2017년도 인건비 총액 (1+2018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17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18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보조·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18\text{년도 경상운영비} = 2017\text{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times (1 + 2018\text{년도 공통 기준율}) + \text{특이 증감소요}$$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반복적인 경비로서 '17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 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

- 산출기준

$$2018\text{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times \text{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2) 사업비

(1) 용자사업

- 용자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정책적·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민간금융시장과 경합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 지원목적·내용·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용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용자조건은 시중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고 부처내·부처간 용자사업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검토
 - 용자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고채 금리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방식으로 재검토*
 - * 외부 차입, 특별한 금리 안정성 요구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예외가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사업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용자기간은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용자 지원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취급수수료는 대손을 포함한 관리비용과 용자취급기관의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용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용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 용자조건 재검토시 「용자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는 용자보조비용 및 용자보조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

* 용자보조비용(용자보조원가총담금) 산정관련 자세한 사항은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용자보조비율은 용자보조비용을 용자원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

▪ 2018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3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참조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 원칙적으로 직접용자방식(전대방식 포함)과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 적용

* 용자지원에 따른 자원조달비용·취급수수료와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을 고려, 비교

(2)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 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자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 민간자금 : 정부(예산·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하고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3)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
 -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자체청사는 임차·매입·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m²)당 단가 및 면적기준

- 청사 신축시 m²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자치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4) 수익사업

□ 신규사업

-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

-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3)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원리금 상환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 대상거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용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 · 이자 상환, 예탁원금 · 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용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 내부거래 확인원칙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 기금간 거래인 경우	⇒	▪ 기금 상호간 확인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최대한 예탁

- 기금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 금지

IV 협의 및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 사항 (제1부 2편 예산편성지침 참조)」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